

중소기업회계기준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최근 **중소기업회계기준**¹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그 산하의 비상장기업협의회(Private Company Council)가 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비상장기업(Private Company)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US GAAP에 대한 수정 및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GAAP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요없거나 요구되지 않는 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포괄적인 회계기준(OCBOA, Other Comprehensive Basis of Accounting)입니다.

이 특수목적회계기준(OCBOAs)은 현금주의회계기준, 세무회계기준, 관리감독기준, 계약기준 및 기타 비일반회계기준(non-GAAP)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모든 중요항목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²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전통적인 회계처리 방식과 발생주의 법인세회계에 기반하고 있는 포괄적인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회계기준은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GAAP의 측정방법과는 일부 상이하며, 보다 많은 영역에서 회계정책의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GAAP 보다는 훨씬 간소한 공시규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회계기준은 아래와 같은 특징 등을 가진 기업들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GAAP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관리감독목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업;
- 과반 이상 주주 및 경영진이 기업공개 의도가 없는 기업;
- 소유주 직접 경영 참여 기업;
-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회계지침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매우 복잡한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기업;
- 중요한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그리고
- 재무제표 이용자가 당해 기업 경영진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이 회계기준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시행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¹ AICPA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for Small-and Medium- Sized Entitie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aicpa.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² 특수목적회계기준(Special Purpose Frameworks)에 대한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AU-C Section 800, Special Considerations에 근거합니다.

필요성: 중소기업회계기준은 GAAP 에 근거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한 원칙의 적용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없이, 효율적이면서도 의미있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경영기업(owner-managed entity): 소유주 직접 경영 참여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된 공개기업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내 대다수의 사업은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소유주 경영기업은 공인회계사를 직원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유주 겸 관리자 또는 경리 담당자가 기업의 회계장부 및 재무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소유주 경영기업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전형적인 기업을 예시하고자 한 것이며, 소유주 경영기업이 아닌 기업이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닌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도 해당 기업의 재무보고의 필요성 및 제반여건에 따라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여부 (authoritative):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테스크포스에서 제정된 특수목적회계기준으로서 공개초안 발표후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본 회계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상급 기술위원회나 미국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얻거나 달리 어떠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복잡성 및 비용의 회피 (avoid needless complexity and cost):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필요한 회계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복잡한 공정가치 측정 대신 역사적 원가를 측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이 회계기준은 파생상품, 위험회피활동, 또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 복잡한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회계기준의 공시규정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경영진에게서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 소유주 겸 관리자 및 담당 공인회계사는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다른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본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상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적합성과 비용절감요소를 고려하면 미국공인회계사협회는 대출기관이 이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회계기준을 허용하는데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대출기관들은 그들의 고객이 현금주의회계 또는 세무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 금융들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반이 되는 회계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대출업체들에게 익숙하고 다년간 대출기관에 잘 통용된 전통적인 회계원칙과 발생기준 법인세 회계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대출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기업의 신뢰성있는 영업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본 회계기준은 신뢰성 있는 회계기준임과 동시에, 적절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며, 보다 간소하고 분명하고 포괄적인 회계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대출업체에게는 매력적일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들에게도 비용절감이 가능한 재무보고 대안입니다.



cutting through complexity

June 24, 2013

중소기업대상의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발간한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KPMG 한국부의 각 지역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York

박종연: 212-872-6696, cpark@kpmg.com

박상환: 212-872-6993, shpak@kpmg.com

이웅근: 212-872-7954, guslee@kpmg.com

이경렬: 212-872-5658, klee@kpmg.com

Los Angeles

김준경: 213-955-8514, jkkim@kpmg.com

김창욱: 213-593-6683, cpkim@kpmg.com

Atlanta

강훈규: 404-222-3580, hoonkang@kpmg.com

홍정기: 404-658-5100, chong@kpmg.com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services of a competent professional should be sought.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here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and opinions of KPMG LLP.

KPMG LLP,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 2013 KPMG LLP,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the U.S.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142399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